공 개

의안번호	제 222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7. 22. (제 14 차)

의결사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일부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7. 22.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6.3.18,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권상장법인의 의무사항 등을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속회사등 상장시 주권상장법인 이사회의 의무 신설(유가상장 §78조의2, 코스닥상장 §19의2, 유가공시 §7①, 코스닥공시 §6①)

나. 중복상장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한 우회상장 제도 정비 (유가상장 §37②, 코스닥상장 §33③)

다. 상장계약위약금 부과근거 마련 (유가상장 §157의3, 코스닥상장 §53의2)

4. 참고사항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2>

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3>

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4>

<별지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9호 중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토요일”로 한다.

제37조 제명 중 “합병”을 “합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장에 해당하는 등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른 우회상장으로 본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종속회사등 상장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종속회사 등 세칙으로 정하는 회사(이하 “종속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보통주권·주식예탁증권 또는 외국주권등을 상장(추가상장 및 변경상장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속회사등의 상장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의할 것
2.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결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제3호의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의할 것

5. 제4호에 따라 결의한 찬성 여부를 종속회사등에 통지할 것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결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1.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제1호의 위원은 이사이거나 「상법」제542조의8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일 것

3. 독립이사가 위원장이고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

4. 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제15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7조의3(상장계약위약금) ①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종속회사등 상장과 관련한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종속회사등이 상장(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억원 이내에서 상장계약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위반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령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주권상장법인이 그 이사회를 통하여 주권비상장법인과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것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2와 제15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종속회사 등이 상장을 신청(상장을 신청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해외증권시장에서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권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별첨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8. (생 략) 29.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 28. (생 략) 29. ----------, 토요일----------.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① (생 략) <신 설>	제37조(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장에 해당하는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른 우회상장으로 본다.
② (생 략) <신 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8조의2(종속회사등 상장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종속회사 등 세칙으로 정하는 회사(이하 “종속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보통주권·주식예탁증권 또는 외국주권등을 상장(추가상장 및 변경상장은 제외한다)하려는 경

현 행	개 정 안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속회사등의 상장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의할 것 2.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결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제3호의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의할 것 5. 제4호에 따라 결의한 찬성 여부를 종속회사등에 통지할 것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결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1.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제1호의 위원은 이사이거나 「상

현 행	개 정 안
	법」 제542조의8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일 것 3. 독립이사가 위원장이고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 4. 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신 설>	제157조의3(상장계약위약금) ①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종속회사등 상장과 관련한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종속회사등이 상장(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억원 이내에서 상장계약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위반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령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별지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8호 중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토요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종속회사등 상장에 관한 특례)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종속회사 등 세칙으로 정하는 회사(이하 “종속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보통주식·증권예탁증권 또는 외국주식등을 상장(추가상장 및 변경상장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속회사등의 상장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의할 것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결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제3호의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등의 상장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의할 것
5. 제4호에 따라 결의한 찬성 여부를 종속회사등에 통지할 것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하고 전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결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1.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제1호의 위원은 이사이거나 「상법」제542조의8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일 것
3. 독립이사가 위원장이고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
4. 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장에 해당하는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상장계약위약금)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종속회사등 상장과 관련한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종속회사등이 상장(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억원 이내에서 상장계약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위반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령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속회사등 상장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종속회사등이 상장을 신청(상장을 신청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해외증권시장에서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전에 해외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제기관 등에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주권비상장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우회상장 관련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그 이사회를 통하여 주권비상장법인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것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첨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7. (생 략) 48.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7. (현행과 같음) 48. ----------토요일----------.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종속회사등 상장에 관한 특례)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종속회사 등 세칙으로 정하는 회사(이하 "종속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보통주식·증권예탁증권 또는 외국주식등을 상장(추가상장 및 변경상장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속회사등의 상장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의할 것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결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주주의 동의 여

현 행	개 정 안
	부를 확인할 것 4. 제3호의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등의 상장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의할 것 5. 제4호에 따라 결의한 찬성 여부를 종속회사등에 통지할 것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결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1.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제1호의 위원은 이사이거나 「상법」제542조의8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일 것 3. 독립이사가 위원장이고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 4. 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제33조(우회상장) ①·② (생 략)	제33조(우회상장) ①·② (현행과 같

현 행	개 정 안
	음)
<신 설>	③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장에 해당하는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53조의2(상장계약위약금)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종속회사등 상장과 관련한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종속회사등이 상장(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억원 이내에서 상장계약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위반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에 따른 위약

현 행	개 정 안
	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령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3>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가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장규정 제78조의2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의가 있은 때

(가) 상장규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의 마련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나) 상장규정 제7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의한 때. 이 경우 상장규정 같은 항 제2호의 주주 보호방안, 같은 항 제3호의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요경영사항)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중 가목(7)·나목(4)·다목(4)·라목(4), 제3호중 가목(1)과 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경영사항) ①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3. ---------- ---------- ---------- ----------
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 ---------- ---------- ----------

현 행	개 정 안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상장규정 제78조의2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의가 있은 때 (가) 상장규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의 마련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나) 상장규정 제7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의한 때. 이 경우 상장규정 같은 항 제2호의 주주 보호방안, 같은 항 제3호의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별지4>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9조의2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의가 있은 때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의 마련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의한 때.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같은 항 제2호의 주주 보호방안, 같은 항 제3호의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단서·제2항(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

제2호라목(7),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3. ---------- ---------- ---------- ----------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2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의가 있은 때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의 마련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의한 때.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같은 항 제2호의 주주 보호방안, 같은 항 제3호의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44